

2025년 부산광역시 마을기업 모집 공고

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(행정안전부)에 따라 부산광역시 마을기업(신규, 고도화)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4. 11. 25.

부산광역시장

1. 공모 개요

- 신청기간 : 2024. 12. 5.(목) ~ 2024. 12. 11.(수) 18:00까지
- 모집분야 : 신규(1회차), 고도화(3회차)
- 신청대상 : 공고일 기준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마을기업 지정(운영)요건*을 모두 충족한 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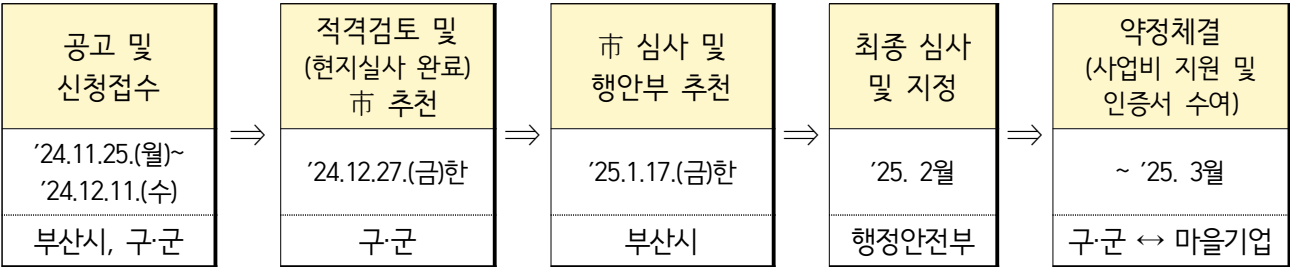
* 마을기업 요건 : 지역성, 기업성, 공동체성, 공공성 ▶ (붙임1) 마을기업 지정요건 및 운영원칙 참조

- 지원내용 : 사업비 및 자립지원
 - 마을기업 육성 사업비 지원

구 분	신규(1차)	고도화(3차)	비 고
지원금	지원금 없음	최대 2천만원	자부담 : 보조금의 20% 이상 (청년마을기업, 인구감소지역은 10%)

※ '2025년 정부예산(안)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정 및 지원 내용 변동 있을 수 있음

- 부산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자립 지원(교육, 컨설팅, 판로지원 등)
- 추진절차



2. 신청자격

- **신규(1회차)** : 지역을 기반으로 공동체가 주도하여 설립한 법인
 - 공고일 기준 최소 5개월 이상 법인으로 설립·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
 - 예비 마을기업 약정을 체결한 지 5개월 이상 경과하고 운영 실적이 있는 기업
- **고도화(3회차)** : 공고일 기준 1·2회차 보조사업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
 - 운영 실적이 뛰어나고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

❖ 필수교육 사전 이수

- 신규(1회차) : 대표자 포함 회원 5인 이상 입문교육 7시간
- 고도화(3회차) · 우수 · 모두에 : 대표자 포함 회원 5인 이상 기본교육 4시간

❖ 교육이수효력

-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신규 만 2년, 고도화 만 1년
- 광역자치단체 심사일 기준 효력이 유지되어야 함

3.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

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
 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
 -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
 - 법령,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
-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
 -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
 -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
 -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
 -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

4. 신청접수 및 방법 ▶ (붙임2) 마을기업 신청 관련 서식 참조

- 접수기간 : 2024. 12. 5.(목) ~ 12. 11.(수) 18:00한
- 접수처 :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·군(마을기업 담당부서)
- 접수방법 : 구·군 방문접수 ※ 우편접수 불가

5. 선정방법 및 절차

- (구·군) 신청기업 적격검토
 - 마을기업 지원기관과 현지조사 실시, 지정요건 충족여부 등 적격검토
- (부산시) 지정 요건 등 심사 ▶ 2025. 1월 초
 - 심사내용 : 지정요건 충족여부, 그간 사업성과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
- (행정안전부) 최종 심사 및 지정 ▶ 2025. 2월 중
- (구·군) 마을기업 약정체결 및 사업비 지원 ▶ 2025. 3월 중

6. 결과통지

- 통지방법 : 구·군을 통해 통보
 - 부산시 심사결과('24. 1월 중), 행정안전부 심사결과('24. 2월 중)

7. 신청서류

구분	신청서류		
기본 서류	공통 (1)		① 사업신청서(서식1) ② 회원 명단(서식2) ③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(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 - (서식2) “단체·법인(마을기업) 출자자(회원) 명단 및 출자금 현황” 활용 제출 가능 ④ 주주 및 조합원 주민등록초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(지역주민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) (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) ⑤ 법인등기부등본(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) ⑥ 법인 정관 사본 ⑦ 법인 회의록(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) 사본 ⑧ 자부담 통장(자부담내역 정리) 사본 ⑨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- (서식4) “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” 활용 제출 가능
기본 서류	추가 (2)	신규 (1회차)	① 입문교육 이수 확인서 ※ 예비에서 1회차 신청 법인 - 예비마을기업 약정서, 실적보고서(서식5), 정산서류(예비)*, 재무제표(전년도) ② 고용인력 증빙서류(4대보험 가입증명 및 주민등록 내역)
		고도화 (3회차)	①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(가점용) ② 실적보고서(서식3), 정산서류(2회차), 재무제표(전년도), ③ 고용인력 증빙서류(4대보험 가입증명 및 주민등록 내역)
기타 증빙 서류 (3)	① 사업자등록증 사본(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) ② 임대차 계약서 사본(계약기간 명시) ③ 인허가증명서 사본(또는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: 토지이용규제확인서 등) ④ 가점 항목을 증명할 서류 ⑤ 기타 회원간 협의된 사항와 보조금 집행실적, 사업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(법인 회의록, 보조금 관련 서류 등)		

8. 유의사항

- 마을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공고내용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제반 책임은 신청 법인에 있습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, 신청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-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부산광역시의 고유권한이며,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.
-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신청자의 부담이며, 제출된 서류는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(행정안전부)」에 따릅니다.

9. 문의처

- (신청서 접수) 구·군 담당부서

구·군명	부서명	연락처	구·군명	부서명	연락처
중구	일자리경제과	600-4485	해운대구	일자리경제과	749-4474
서구	복지정책과	240-6684	사하구	경제일자리과	220-4484
동구	일자리경제과	440-4235	금정구	일자리경제과	519-4852
영도구	경제산업과	419-4481	강서구	경제진흥과	970-4478
부산진구	일자리정책과	605-4341	연제구	일자리경제과	665-4544
동래구	일자리경제과	550-4934	수영구	일자리경제과	610-4824
남구	일자리경제과	607-4294	사상구	일자리경제과	310-4616
북구	일자리경제과	309-4349	기장군	일자리경제과	709-4395

- (교육 및 컨설팅) 부산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((재)부산디자인진흥원 ☎ 051-950-1235)
※ 입문교육(2024. 12. 13.), 전문교육(2024. 12. 16.)
- (기타문의)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지원과(☎ 051-888-4768)

붙임 1. 마을기업 지정요건 및 운영원칙

2. 마을기업 신청 관련 서식 1부

3. 마을기업 지정 심사 기준 1부. 끝.